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27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이헌승 · 이성권 · 김선교
정성국 · 유용원 · 김승수
박덕흠 · 김상훈 · 김 건
김도읍 · 김예지 · 주호영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특히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예외 적용이 다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의 재편과 건전화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허용 시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산업재편 등이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을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통령령으로-----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